

「구미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2026. . .
제출자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문 일부를 수정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구미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제5조제3항 중 “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된”을 “위원장이 미리 지명한”으로 함.

「구미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
례안」에 대한 수정안

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문 일부를 수정함.

제5조제3항 중 “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된”을 “위원장이 미리 지명한”으로 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u>구미시</u> <u>민자유치사업심의위</u> <u>원회 설치·운영</u> <u>조례</u>	<u>구미시</u> <u>민간투자사업심의위</u> <u>원회 운영 조례</u>	(개정안과 같음)
제1조(목적) 이 조례 는 <u>사회간접자본시</u> <u>설에 대한 민간자</u> <u>본유치촉진법 제7</u> <u>조 제3항 및 동법시</u> <u>행령 제4조제7항의</u> 규정에 의하여 구 미시 <u>민자유치사업</u> <u>심의위원회(이하</u> <u>“위원회”라 한</u>	제1조(목적) ----- 「 <u>사회기반시설에</u> <u>대한 민간투자법</u> 」 <u>제6조제4항 및 같은</u> <u>법 시행령 제4조제1</u> <u>0항-----</u> ----- <u>민간투자사</u> <u>업심의위원회-----</u> ----- -----	제1조(목적) (개정안 과 같음)

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.

③ 위원은 구미시 본청 각 국장과 구미시 의회의원 2명,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2명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-----.

제2조(구성) ① 구미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-----
1명을 포함하여 15명 -----
-----.

② -----
----- 위
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구미시 소속 관계 공무원 5명 이

제2조(구성) ①·②
·③ (개정안과 같음)
1. ~ 3. (개정안과 같음)

④ (생략)

제3조(실무위원회)

위원장은 위원회에
상정할 안건을 사전
에 심의 조정하고 위
원회의 심의를 효율
적으로 수행하기 위
하여 필요하다고 인
정하는 경우에 실
무위원회를 운영할
수 있다.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

다음 각호의 사항을
심의한다.

1. 민자유치사업과
관련한 주요시책
수립에 관한 사항

내

2. 구미시의회에서

추천하는 의원 2명

3. 민간투자사업에

관한 학식과 경험

이 풍부한 사람

④ (현행과 같음)

제3조(실무위원회) -

----- 심
의·조정-----

해당 안건의 심의
기간에 한정하여
실무위원회를 구
성·운영---

제4조(기능) -----

---- 각 호-----
-----.

1. 민간투자사업--

④ (현행과 같음)

제3조(실무위원회)

(개정안과 같음)

제4조(기능) (개정안
과 같음)

1. ~ 3. (개정안과
같음)

2. 민자유치시설사
업 기본계획 수립
및 변경에 관한
사항

3. 사업시행사 지정
및 사업계획 심의

4. (생략)

5. 기타 민자유치
사업의 원활한 추
진을 위하여 위원
장이 부의하는 사
항

제5조(위원장의 직
무) ①·② (생
략)

③ 위원장 및 부위
원장이 모두 사고
가 있을 때에는 위
원장이 지명한 위
원이 그 직무를 대
행한다.

2. 민간투자시설사
업 -----

3. -----
사업계획에 관한
사항

4. (현행과 같음)

5. 그 밖에 민간투
자사업-----

회의에 부치는 --
--

제5조(위원장의 직
무) ①·② (현행
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회의에 출석한
위원 중에서 호선
된 -----.

4. (현행과 같음)

5. (개정안과 같
음)

제5조(위원장의 직
무) ①·② (현행
과 같음)

③ -----
----- 위원
장이 미리 지명한 --

-----.

제7조(간사 등) ① 위
원회의 사무를 처
리하기 위하여 간
사 1인과 서기 1인
을 둔다.

② 간사는 민자유
치사업업무담당주
사가 되고, 서기는
민자유치사업담당
자가 된다.

제8조(의견청취 등)
위원회는 업무수행
을 위하여 필요하다
고 인정할 때에 관
계전문가를 출석하
게 하여 의견을 듣
거나 관계기관, 단
체 등에 자료 및 의
견제출을 요청할 수
있다.

제9조(회의록) 위원
장은 회의록을 작성

제7조(간사 등) ① --

----- 위원회가
구성된 경우 간사 1
명과 서기 1명-----

② ----- 민간투자
사업 소관 업무 부
서의 담당 팀장이 -

--- 민간투자사업
담당자-----.

제8조(의견청취 등)

----- 관계 전문
가-----
----- 관계 기
관-----

수 있다.

제9조(회의록) -----
----- 작성하

제7조(간사 등) ① ·
② (개정안과 같음)

제8조(의견청취 등)
(개정안과 같음)

제9조(회의록) (개정
안과 같음)

비치하여야 하며,
그 결과를 시장에게
즉시 보고하여야 한
다.

제10조(수당 및 여
비) 위원회의 회의
하는 위촉위원 및 관
계전문가에 대하여
는 예산의 범위내에
서 수당과 여비를 지
급할 수 있다.

제11조(운영세칙) 이
조례에서 정한 것
외에 위원회의 운
영에 관하여 필요
한 사항은 위원회
의 의결을 거쳐 위
원장이 정한다.

고 갖추어 두어야 -

-----.

제10조(수당 및 여
비) 위원회의 회의
----- 관계
전문가에 대해서는
예산의 범위 안에서
「구미시 각종 위원
회 구성 및 운영에
관한 조례」가 정하
는 바에 따라 -----
-----.

제11조(운영세칙) --
----- 것
외-----

-----.

제10조(수당 및 여
비) (개정안과 같
음)

제 11 조 (운 영 세 칙)
(개정안과 같음)